

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전자부품금형MC ·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 · 대경권금형산업통합협의회

업 무 협 약 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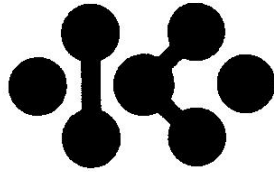
한국산업단지공단 대경권본부 전자부품금형MC와 대구대학교 산학협력단, 대경권금형산업통합협의회 (이하 “협약 기관”이라 한다)는 다음과 같이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 (목적) 본 협약은 협약 기관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기관 상호간의 발전 및 지역 중소기업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협력대상분야) 본 협약은 협약 기관의 발전 및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.

1. 각 기관간의 교류협력 활성화
2. 공동 기술개발 및 기술정보 상호교환, 기술교류
3. 기업경영 및 혁신을 위한 전문인력과 기술 지원 및 교육
4. 학생교육프로그램 및 인턴쉽 등 현장실무형 전문인력 양성
5. 연구시설 및 특화장비·인프라 공동활용
6. 전자부품금형MC 협의체 운영 및 행사 협력
7. 협의회 회원기업의 대구대 가족회사 가입을 위한 상호협력
8. 기타 협력 가능한 과업 발굴 및 수행

제 3 조 (비밀유지) 협약 기관간 업무협력 과정에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 사항을 상호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.



제 4 조 (협약의 이행) 협약 기관은 이 협약에 의한 각 조항의 협의사항을 다음 각 호에 입각하여 신의를 가지고 성실히 이행한다.

1. 상호 협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추진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.
2. 협약 기관은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·운영한다.


제 5 조 (권리의무 승계 등) 약정 체결 후 협약 기관 간 명칭변경 및 대표자 변경 등 주요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 약정에 따른 권리의무는 포괄 승계 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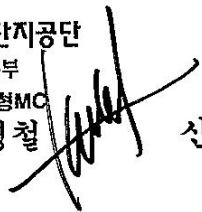
제 6 조 (협약기간) 본 협약은 협약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 해지의 서면통보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제 7 조 (해석)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위와 같이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각 당사자는 증명하면서 본 협약서 3부를 작성하여, 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2년 3월 22일

 한국산업단지공단
대경권광역본부
전자부품금형MC
회장 김영철



 대구대학교
DAEGU UNIVERSITY

산학협력단장 최병재
최병재

대경권금형산업통합협의회

공동회장 유수창

